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712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업역규제 폐지시행(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건설공사 수주금액이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건설공사 수주금액보다 현저히 적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영세 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전문건설공사 발주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정건설추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 전자우편 : yhkogo@korea.kr
- 팩　　스 : 044-201-5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전화 044-201-3497, 35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